#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83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신영대・이훈기・김정호

허종식 · 임광현 · 김기표

정일영 · 전재수 · 황명선

정을호ㆍ허 영ㆍ윤준병

박희승 • 추미애 • 정태호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유·무형적 지원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캐나다 정부는 2024년 인공지능산업 지원 육성을 위해 약 2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컴퓨팅 인프라,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의 과감한 금융적 지원을 추진하는 중임.

우리 정부도 올해 인공지능 초격차 산업 지원 의지를 선언하고,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중소기업 지원책 등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초기시장 창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의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 집약사업에서 산업 전문가의 육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국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6"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목 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하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2027년 12월 <u>31일</u>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31일-----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

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

가. · 나. (생 략)

3. (생략)

②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 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 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

1. (현행과 같음)
2
가
<u>.</u>
1)
<u>100</u> 분

<u>의 3</u>(중견기업은 <u>100분의</u> <u>6</u>, 중소기업은 <u>100분의 1</u> 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 자하는 경우: <u>100분의 15</u> (<u>중소기업은 100분의 25</u>)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 략)

3. (생략)

② ~ ⑤ (생 략)

<u>의 15100분의</u>
<u> 20</u> <u>100분의</u>
<u>25</u>
2)
2027년 12월 31일
<u>100분의 25</u>
- <u>중소기업은 100분의 30</u>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L

- 3. (
- ② ~ ⑤ (현행과 같음)